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</p> <p>제17조(기타사항) ① (생략)</p> <p>② 초빙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위원, 기성회 <u>이사</u>, 총동문회 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</p> <p>제17조(기타사항) ① (생략)</p> <p>② 초빙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위원, 기성회 임원, 총동문회 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(신설)	<p><u>부칙(제 호, 2014. 6. .)</u> <u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